

개정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중 개정령(개정 7. 2)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자동차의 건축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관광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상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숙박시설(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관광호텔을 제외한다)·의료시설 종합병원에 한한다)·전시시설·운수시설(공항 시설에 한한다)·공동주택·운동시설·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상업지역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호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도로교통법 제6조”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관광호텔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관광호텔의 등록갱신의 경우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한다.
- ③ (기존 건축물등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1979년7월13일(대통령령 제9,536호 주차장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의 건축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과 이 영 시행당시의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이 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이 서로 같은 용도의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건축중인 자동차여행자호텔의 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건축신고를 마친 것을 포함한다) 건축중에 있는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